

개발과 이슈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KOICA 사업 추진 방안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발전(SDGs) 시대 이전부터 UN과 주요 공여국들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장애를 고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2015년에는 SDGs를 채택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개발(Leave no One Behind)’의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 세계 장애인구의 약 80%가 개도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분야는 이러한 SDGs의 기본정신을 추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주요 국제협약 국내발효 및 관련 국내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환경은 점진적으로 구축되어 왔다. KOICA 역시 2016년부터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국내외 주요 장애 관련 단체와의 파트너십 확대 및 사업 발굴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관 미션 및 주요 정책적 방향성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제도, 조직, 사업관리 측면에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추진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KOICA 사업추진 차원에서 국가지원계획(CP) 체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장애 분야 사업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정보센터 송수전 연구원, 김성은 연구보조원

I. 국제개발협력과 장애분야

2015년 국제사회는 뉴욕에서 열린 UN세계정상회의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개발(Leave no One Behind)”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2030년까지 17개 목표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개발의 핵심은 가장 소외된 계층에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SDGs 시대에 국제개발협력에서 장애가 가지는 의미와 함의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 세계 인구의 약 15%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약 80%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극심한 빈곤에 놓여있는 상황¹⁾에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은 선언적이고 당위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KOICA는 4P(사람 · 평화 · 번영 · 환경) 정책을 근간으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을 기관미션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기관 미션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개도국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으로, 향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발협력분야에서의 장애이슈 동향을 짚어보고, KOICA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현황 분석을 통한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국내외 추진 배경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장애 이슈 고려를 위한 국내외의 법적, 제도적 근거는 SDGs 출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구축되어 왔다. 1993년 국제사회는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기준규칙을 제정하여 개발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을 개발의 주체이면서 수혜자로 인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이 채택되었는데, 협약 32조에서는 국제개발 프로그램 등 국제협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접근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다.(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2016)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는 장애이슈가 포함되지는 못하였으나 2010년 2월 ‘장애인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 실현 결의’가 채택되었고 MDGs를 이어받은 SDGs는 명시적으로 장애인

1) <https://www.who.int/en/news-room/fact-sheets/detail/disability-and-health>. (접속일: 2019.11.29)

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목표들을 여러 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2015년 이후의 유엔 개발 프레임워크에서는 장애가 포함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2016)

국내 차원에서는 CRPD를 발효하고, 2012년 인천에서 개최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ESCAP)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주도국으로 참여하는 등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여건이 발전시켜 왔다.

2013년 7월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11항 개정을 통해 장애가 범분야 이슈에 포함되면서, ‘여성’과 ‘아동’과 함께 ‘장애인’이 명시되어 포함되었다. 그동안 동 법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을 기본정신의 하나로 제시했었으나 장애인이 명시되지 않아, 장애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장애인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 장애인권리협약(CRPD) :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으로 2006년 12월 31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됨. 동 협약에서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국제협력의 이용자이자 기여자로서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 인천전략 :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인천에서 개최된 유엔에스캅 정부간 고위급회의 때 채택된 제3차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의 행동계획으로, 개최지역의 이름을 따서 인천전략이라고 명명함.

KOICA 기관 차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4P 정책과 함께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을 기관 미션으로 설정하여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규범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방향성이 실제 기관 정책 및 사업수행으로 연계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과제들이 여전히 있다. 이에 선진공여국의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KOICA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해 나가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관련한 제언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I. 선진공여기관의 장애분야 주요이행 현황

선진공여기관들은 개발협력분야에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이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 그리고 스웨덴을 중심으로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영국 국제개발부(DFID)

〈주요특징〉

-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을 통해 장애에 대한 새로운 기준 및 장애포괄 관련 4가지 우선순위 제시
- 장애포괄 전략이행 계획 수립을 통해 우선순위별 성과수립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 장애 정책 마커를 활용하여 2023년까지 프로그램 비율 두 배 확대를 목표로 설정

DFID는 정책과(Policy Division) 내 포괄적사회부(Inclusive Societies Department) 산하 장애팀(Disability Team)을 두고 있으며, 2014년에는 동 부서의 주도하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장애 프레임워크(Disability Framework–Leaving No One Behind)’를 수립하였다. 2015년에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장애 프레임워크 위한 지난 1년(Disability Framework–One Year On Leaving No One Behind)’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

2018년 7월 세계 장애 정상 회담(Global Disability Summit) 이후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점점 확대되는 상황에서, DFID는 장애 포괄에 관한 최초의 전략인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한 DFID의 전략 2018–2028 (DFID’s Strategy for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2018–23)’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을 통해 DFID는 모든 개발협력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고려하는 방법과 장애 포괄에 관한 새로운 기준과 4가지 우선 순위 분야(포괄적 교육, 사회적 보호, 경제적 권한 부여, 인도주의적 행동)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우선순위마다 성과를 수립하고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 전담부서, 마감기한을 설정한 ‘장애포괄 전략 이행 계획(DFID Disability Inclusion Strategy Delivery Plan)’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DFID는 향후 5년 동안 이 전략적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장애포괄적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OECD DAC 장

에 정책 마커를 활용하여 2023년까지 장애 프로그램의 비율을 두 배로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DIFD의 대표적 장애포괄적 개발사업으로는 ‘장애포괄적 개발 프로그램(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DID) Programme)’이 있다. 2018년부터 6년간 추진되는 동 프로그램은 교육, 고용, 보건, 낙인 및 차별 감소 등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제공하고 국제 개발협력 주체들이 문제를 우선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주요특징〉

- 1997년 양자 공여기관으로는 최초로 장애 관련 정책인 ‘장애 정책 페이퍼’ 발간
- 직원 및 파트너 기관에 대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포괄적 프로그램 기획
- 장애포괄 교육 방법노트 개발을 통해 지침과 정보를 제공

USAID는 1997년 ‘장애 정책 페이퍼(USAID Disability Policy Paper)’를 발간하고, 장애 관련 개발협력 사업의 특징과 성과 평가 절차를 제시하였다. USAID는 장애정책을 보유한 최초의 양자 공여기관으로, 이를 통해 미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한 기회 제공을 강화하도록 수원국 정부, 사업수행기관, 기타 공여국의 참여를 촉진하고 USAID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17)²⁾

2016년 발표된 차별금지 정책(Non-discrimination Policy)은 상기 장애 정책을 강화하며 USAID 직원 및 파트너들이 포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USAID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USAID 2018)

USAID의 글로벌 사무소 미션 센터(Mission and Center of the Global Bureau)와 사무소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개인 및 기관과의 컨설팅을 통해 수원국 장애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USAID 직원뿐만 아니라 파트너기관들은 장애 이슈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장애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17)

2) 한국국제협력단(2017)

최근 USAID는 장애포괄 교육 방법노트(How-To-Note Disability Inclusive Education)를 개발하여 교육분야 사업 담당자 및 파트너가 장애포괄 교육에 대한 지원 사례를 이해하고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역 전략계획부터 USAID 프로그램 주기(USAID program cycle)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를 통합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Box 1〉 USAID 장애포괄 교육 방법노트 내 장애포괄 교육 프로그램 형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2018년 11월 발간된 USAID 교육 전략은 미국 정부의 전략과 궤를 같이 하며, 교육 프로그램 형성 과정에서 기반이 되는 6가지 원칙과 4가지 중점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장애포괄적 교육은 이러한 원칙과 중점 분야 전반에 걸쳐 내재화되어있으며, USAID 교육 정책 상의 각 우선순위는 장애포괄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USAID 장애포괄 교육 방법노트에서는 이러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장애 학생들을 포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요 고려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표〉 체크리스트 예시

*전체 원문은 별첨 1 참조

중점 분야	고려사항
어린이와 청소년, 특히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이들에 대한 증대된 양질의 교육에의 접근성	- 장애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교육 시설은 USAID의 장애 정책 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의거하여 건축되었는가? ...(이하 생략)
향후 학습의 기반이 되는 문해/수리 능력 및 사회정서 역량을 습득	- 장애 어린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개별적 맞춤형 교육 계획을 제공하고 있는가? - 학교는 시험시간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가? ...(이하 생략)
청년들이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고, 직장을 구하고 긍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술을 습득	- 주류(mainstream) 직업/기술/3차 고등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장애가 있는 젊은 여성과 남성을 채용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훈련 시설들은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필수적인 개인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니까? ...(이하 생략)
고등교육 기관이 연구 시행과 양질의 교육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보유	- 고등교육 시스템이 접근가능한 건물, 수화 통역사, 점자 등과 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가? - 대학교가 장애지원센터와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가? ...(이하 생략)

출처: USAID How-To Note Disability Inclusive Education 2018

□ 호주 외교통상부(DFAT)

〈주요특징〉

- 2014년 개발정책에서 개발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 및 혜택 강조
-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 및 호주의 전문성을 고려한 사업 제시
- 장애포괄적 개발지침서 제공을 통해 사업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포괄적 개발 고려에 필요한 사항 제시

장애포괄적 개발을 개발협력사업의 주된 원칙으로 삼는 DFAT는 2014년 ‘호주의 지원: 번영, 빈곤경감, 그리고 안정의 추구(Australian aid: promoting prosperity, reducing poverty, enhancing stability)’라는 개발정책을 발표하였고, 여기서 장애인이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는 것을 강조하였다.

DFAT 개발정책국 산하 ‘개발정책 및 교육분과(Development Policy & Education Branch)’에서는 장애포괄적 개발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데, 2015년 두번째 장애포괄적 개발 전략인 ‘모두를 위한 개발 2015-2020(Development for all 2015-2020)’를 발표하여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한 6대 우선순위와 호주의 전문성을 고려한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2015년에는 ODA 사업 담당자들을 위한 ‘장애포괄적 개발 지침서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Guidance Note)’를 구축하였다. 동 지침서는 ‘모두를 위한 개발 2015-2020’과 연계하여 원조관리주기(aid management cycle)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포괄적 개발을 고려하기 위해 진입점(entry points), 진행단계, 주요 고려사항 등을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DFAT는 이중트랙접근법(장애특정적, 장애포괄적)과 합리적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³⁾를 소개하고 ‘모두를 위한 개발 2015-2020’의 전략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 또한 정책방향, 기획 및 디자인, 이행 및 모니터링, 평가 단계 등 원조관리주기 모든 단계에서 장애 목표 및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진입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프로그램 영역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진입점을 식별하는 빠른 체크리스트(별첨 1 참조)를 첨부하였다.

* 장애특정적 접근: 장애인 개개인이 처한 니즈(Needs)를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이 주된 이용자가 되는 것이 특징.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및 참여가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전략

* 장애포괄적 접근(장애주류화): 모든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장애관점을 포함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3) 합리적 편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개별필요를 충족시켜 호주의 원조에 참여하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및 조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편의의 필요성은 ‘모두를 위한 개발 2015-2020’에서 인지하고 있으며, 접근 가능한 교통 수단, 수화 통역사, 접근 가능한 회의장 및 접근 가능한 형식의 문서 등을 포함한다. (DFAT, 2015)

사업 측면에서는 사업의 품질, 효과성, 지출 평가를 통해 장애포괄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는데, 이 과정은 원조품질점검(Aid Quality Checks)의 주요 평가질문에 대한 보고와 분석을 포함한다. 주요 질문은 원조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해결하였는지와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 단계에서 장애인 단체를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는지의 여부를 묻는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연례보고서’에 장애포괄적 개발 사업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Box 2〉 DFAT 원조 프로그래밍 사이클(Aid Programming Cycle) 내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한 신속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DFAT는 정책 및 방향 설정, 기획 및 설계, 이행 및 모니터링, 성과보고 및 평가 등 원조관리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 포괄을 고려한다. 먼저 국가 및 지역 내 장애 포괄에 대한 주요 과제와 한계점 파악하고 장애 특정 및 주류화 접근을 통해 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도출한다. 그 다음 모든 문서에 장애포괄 조치를 명시하고 장애인 및 장애대표기관의 참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잠재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절한 재원을 확보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장애포괄 구축하고 장애포괄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논의에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정부가 워싱턴그룹(Washington Group) 질문을 국가인구조사에 통합하도록 지원하여 장애 분포도를 확인하고 워싱턴그룹 질문을 사용하여 원조 프로그램 데이터를 장애별로 분리한다. DFAT가 제시한 신속체크리스트(quick checklist)는 프로그램 영역에서 주요 진입점을 식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표〉 체크리스트 예시

*전체 원문은 별첨 2 참조

정책 및 방향 설정	- 성과평가프레임워크는 장애 분리 데이터를 사용하는가? - 협력 다자기관이 핵심 자원과 특정 활동 모두에서 장애포괄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하 생략)
개념 및 디자인	- 지원계획은 접근성 디자인 지침(Accessibility Design Guide)에 부합하여 설계되는가? - 사업 기획이 장애인에게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고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는가? (이하 생략)
위험관리 및 조달	- 위험 매트릭스(matrix)에 장애 포괄을 적용하는가? - 지원 범위에 장애포괄 결과물(deliverables)이 명시되고 예산이 분배되어 있는가? (이하 생략)
모니터링 및 평가	- 장애포괄에 대한 수행파트너의 성과가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 내에 모니터링 되고 있는가? - 평가가 장애포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가? (이하 생략)

출처: DFAT Disability-Inclusion in the DFAT Aid Program 2015

□ 일본국제협력단(JICA)

〈주요특징〉

- 주제별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장애포괄적 개발사업을 추진
- 장애 관련 주요 이슈 및 사업 기획에 필요한 상세 접근방식 제시
- 아시아-태평양 장애개발센터⁴⁾ 설립을 통해 아태 지역 장애인 권리와 역량 제고를 위한 개발협력 활동 추진

JICA는 2009년 ‘JICA 장애에 대한 주제별 가이드라인(JICA Thematic Guidelines On Disability)’을 수립하여 장애포괄적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JICA의 장애포괄적 개발에 대한 목표, 원칙 및 유의사항, 장애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⁴⁾ 특히 이중트랙접근법에 따른 장애주류화(mainstream)과 장애특정적(targeted) 사업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분야별 접근방식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개발협력헌장(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서 장애인에 대한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같은해 국제협력과 장애에 관한 일-아세안 고위급 관리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국들은 ‘2015년도 및 이후의 아세안 지역 국제협력 및 장애에 관한 도쿄의 권고’를 채택하였다.

JICA는 2002년 태국에 설립한 ‘아시아-태평양 장애개발센터(APCD)’를 통해 아태 지역의 장애인들의 권리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개발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JICA는 기술협력사업, 증여, 차관, 시민사회협력사업, 민간협력사업에 따라 분류하여 장애관련 사업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으며, 기술협력부문에서는 장애특정 프로그램과 장애포괄 프로그램(주류화)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 스웨덴국제개발부(Sida)

〈주요특징〉

- ‘장애인을 위한 인권: 업무계획’ 채택을 통해 중기목표와 활동 제시
-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한 인권기반 접근법 사용
- 원조제공 대상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요약서 작성을 통해 사업발굴 및 기획에 필요한 톨 제시

4) 한국국제협력단(2017)

Sida는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의 인권이 스웨덴의 우선가치라고 표명하였다. 2009년에는 기관 개발협력활동에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을 위한 인권: 업무계획(Huma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ida’s Plan for Work)’을 채택하였다. 동 계획은 중기목표와 24가지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의 인권을 개발협력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과 “Sida의 직원 및 사업 수행자들의 지식과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중기목표로 밝히고 있다.(Sida 2013)

Sida는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해 인권기반 접근법(Human Rights Based Approach(HRBA))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접근법은 스웨덴의 개발협력활동을 이끄는 법적 근거와 원칙을 제공한다. 여러 주제별 분야, 성평등, 아동, LGBTI, 장애인의 인권 등 몇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인권기반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Sida는 동 인권기반접근법을 장애포괄적 개발에 실제 적용하기 위해 스웨덴이 원조를 제공하는 거의 모든 지역 및 국가의 장애 관련 정보와 지침이 담긴 요약서(brief)를 개발하였다. 동 요약서는 장애인 현황, 장애 관련 법 및 정책의 여부, 수행 기관, 책임성 매커니즘, 주요 시민단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스웨덴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장애권리 보장을 위한 스웨덴의 지원 전략을 세우기 위해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데 필요한 툴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장애인이 기업가정신 및 민간부문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생계 자원 및 툴(Livelihood Resources and Tools)에 관한 링크를 제공하여 특정 분야에 장애포괄을 제고하는 가이드라인 및 좋은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

〈Box 3〉 Human Rights Based Approach at Sida 내 에티오피아 요약서 질문리스트

- 스웨덴은 책임성 체계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매커니즘, 인권 기관 및 감시 단체에 대한 지원의 일부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가?
- 스웨덴의 시민사회 지원 모달리티가 장애인당사자조직(DPO)을 더 수용하고, 이들 조직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며, 법적, 정책적 공약 이행의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가?
- 스웨덴은 DPO와 장애인들이 전문 네트워크, 학술 교류 그리고 사회문화 행사에 참여시키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가?
- 스웨덴은 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중점적으로 SRHR(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 관련 프로그램, 특히 젠더-기반 폭력과 여성 역량강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가?
- 스웨덴은 장애인들이 장애 아동의 등록과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지원과 같은 사법 접근성 제고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의 권리가 포함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가?
- 스웨덴은 다양한 장애인들이 기업가 지원과 민간 부문 프로그램을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가?
- 스웨덴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32조를 고려하여, 양자 공여기관과 다자 기구들의 공동 원조 계획 회의에 장애 관점이 논의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하여 대사관은 어떠한 자원과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인가?
- 스웨덴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 관련 기초선 관련 연구와 참여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스웨덴은 현지 장애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또 이들을 팀 지도자로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 스웨덴은 에티오피아의 장애인의 권리와 이들의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스웨덴의 입장에 대한 가장 최근 정보를 유지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출처: Human Rights Based Approach at Sida

IV. 장애분야 주요 KOICA 정책 및 제도, 사업현황

KOICA는 지난 2016년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추진방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초 국제개발협력 사업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하기 위한 내부 절차와 기제를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⁵⁾을 수립하였다.

대회협력 차원에서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스페셜올림픽위원회(Special Olympics International, SOI),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MOU 체결 및 신규 MOU 체결 대상 장애인체 확대 등을 통해 주요 장애관련 행사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확대 및 사업 수행을 위한 협업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및 사업 측면에서 볼 때,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을 위해 조직 내부 차원의 체계 및 기반 구축을 위해 다각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과제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정책 현황

KOICA는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를 5대 분야로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환경, 성평등, 인권은 범분야로 모든 사업에서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환경에너지 분야는 물, 교통, 에너지, 과학기술혁신을 포함한 4대 세부분야로 나뉘어져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을 포함한 총 10대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을 수립하였다.

장애 분야의 경우 KOICA 사업 분류 체계로는 별도의 사업 분야가 아닌 사업 내용에 따라 10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 장애특정적 프로젝트 사업인 요르단 청각장애 특수학교 건립사업은 교육 분야로, 방글라데시 안질환예방 및 치료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보건 분야로 분류된다.

이슈 측면에서는 취약계층의 일부로 아동, 난민과 함께 인권의 한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다.

5)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2017),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가이드라인(2018)

그러나 현재 별도의 인권전략⁶⁾이 부재한 상황이며, 교육과 공공행정 중기전략의 전략 목표 및 프로그램에서 취약계층 혹은 취약계층의 일부로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분야	전략목표	프로그램
교육	2.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여성, 장애인, 학교 밖 아동, 빈곤계층 등 교육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접근성 강화
공공행정	3. 법·제도의 포용성 향상	여성 및 취약계층의 인권·시민권·사회권 보장

2018년 수립된 KOICA 기후행동을 위한 중기 이행계획(2019-2021), 성평등 제고 및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를 위한 KOICA 중기 이행계획(2019-2021), SDG16이행을 위한 중기 이행계획(2019-2021)에서도 장애분야 혹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방향이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⁷⁾

결론적으로 KOICA 중점분야의 일부 전략목표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상 ‘장애’라는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방향성 및 세부 과제를 담은 정책문서는 아직 부재하여, 향후 장애 관련 별도의 전략 수립 혹은 인권전략 내에서 장애 이슈가 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성과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담은 문서를 수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제도 현황

○ 내부지침 및 규정

장애분야와 같이 범분야적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이중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평등 및 환경 분야의 경우 현재 내부적으로 지침 및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주류화 도구 활용, 직제 편성 ▲사업 관리 및 평가를 위해 주류화 대상 범주, 주류화 가이드라인 수립 및 운용 ▲관련 분리통계구축 및 정책마커 실시 ▲교육 실시 및 교육도구 개발 ▲관련분야 파트너십 강화 ▲자문

6) 현재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인권전략 수립 중에 있음.

7) 다만 SDG16 이니셔티브 차원에서는 소외·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및 정의 접근성 강화를 사업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장애분야의 경우 현재 관련 규정이나 내부지침은 별도로 제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사업확대 동향을 고려하여 규정 마련을 추진해 볼 수 있다.

○ 담당관 직제

상기 내부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성평등과 환경분야의 경우 담당관 직제를 두고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평등 분야의 경우 각 실별로 성인지담당관 1명과 함께 전략 및 섹터차원에서 성평등 업무를 전담하고 총괄하는 젠더전문관이 있으며, 환경분야도 유사하게 담당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장애분야의 경우 장애를 별도로 전담하는 인력과 담당관 직제는 부재한 상황이다.

○ 전문위원회

KOICA가 운영 중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교육, 보건, 거버넌스, 농림수산, 교통 및 도시개발, 과학기술혁신, 기후변화·환경(물,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 성평등, 인권 포함 총 9개 분야이다. 이 가운데 장애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의 경우 인권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 조직 현황

○ 전담부서 및 인력

호주나 영국과 같이 장애를 전담하는 부서는 부재하나, 범분야 이슈 총괄 소관부서에서 장애 분야 사업에 대한 자문과 모니터링,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내부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교육

지난 2017년에는 섹터 부서 추진으로 장애특강이 실시된 바 있으며, 2018년부터는 장애분야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장애분야 의무교육을 통해 단내 직원들의 기본적인 장애 감수성 증진 및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사업 관리 측면에서의 실무교육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해 볼 수 있다.

□ 사업 관리 및 이행 현황

장애포괄적 개발의 이행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장애주류적 접근 및 장애특정적 접근을 통한 이중트랙 접근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형성할 때

반영해야하는 내부 이행지침이나 툴킷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장애마커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장애특정적 사업 및 장애주류적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며, 주류화사업의 경우 장애분리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과 관리나 모니터링 차원에서 더욱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지 관점이 사업단위까지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017년 수립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발굴·형성 및 이행 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검토 항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 사업 시행 절차별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 장애 분야 사업 실적

○ 전체 협력사업비 기준 대비 장애관련 사업 현황

지난 7년간(2012-2018년) KOICA가 수행한 전체 사업 가운데 장애 관련한 사업⁸⁾은 예산 기준으로 평균 0.45% 정도에 해당하여 비중 면에서는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2012년 0.13%에 비했을 때 그 비율은 2015년 이후 약 3배 정도로 증대하였고, 연도별로 전년대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2018년 KOICA 전체사업 예산 대비 장애 관련 사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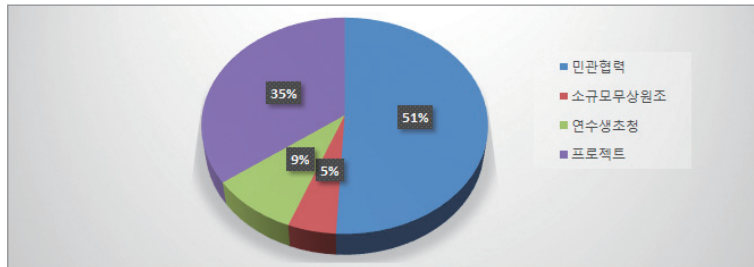
단위(백만원)

연도	장애분야 예산	전체 협력사업비	비율
2012	600	449,460	0.13%
2013	780	464,970	0.17%
2014	1,750	513,040	0.34%
2015	3,220	568,350	0.57%
2016	2,660	549,390	0.48%
2017	4,159	553,285	0.75%
2018	3,281	595,254	0.55%
평균	16,450	3,693,749	0.45%

※ 사업명 중 "장애"를 포함하는 사업 대상으로 전체 지원액 중 공여국 내 비용(행정비, 개발인식증진비)은 제외

8) 현재 장애 관련 사업을 분야로 별도로 관리하거나 장애마커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하여 사업명 중 "장애"를 포함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2012~2018년 장애관련 사업 가운데 사업유형별 비중(예산기준)〉



출처: KOICA 사업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장애관련 사업 가운데 사업유형별 비중 현황

예산 기준, 같은 기간 내 KOICA 장애관련 사업 가운데 사업유형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민관협력사업으로, 인천전략이행기금 내 민관협력 사업 추진 및 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DiDAK)⁹⁾와의 협업, 우리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의수 제작 지원과 같은 혁신적기술프로그램 사업 등을 통해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별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동 기간 내 소수¹⁰⁾에 불과하여 국별협력사업으로 이행되는 장애특정적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 장애이슈 논의 동향 및 선진공여국들의 장애 분야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할 때, KOICA에 제시하는 시사점은 크게 ▲전담부서 운영 및 인력 배치 ▲전략 수립 ▲장애 프로그램 비율 확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지침, 정보,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제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KOICA의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9) 개발협력연대는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산하 구성된 혁신적인 민관협력체제로, 장애 분과(DiDAK)는 2015년 구성됨.

10) 주요 장애특정적 국별협력사업의 예로 요르단 청각장애 특수학교 건립사업('14-'17/520만불), 방글라데시 안질환예방 및 치료역량 강화사업('14-'20/850만불)이 있다.

1. 전략적 방향성 설정 및 CP 체계 내 사업발굴 활성화

장애특정적 사업 혹은 장애주류화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전략 미수립으로 인한 방향성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발굴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전략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혹은 별도의 장애전략 수립이 아니더라도 장애분야에 대한 방향성을 담은 정책문서 수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장애특정적 사업 발굴 확대 또는 장애와 관련성이 높은 사업에서 주류화강화를 통한 사업발굴로 이어지도록, 우선순위 및 매커니즘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으로 KOICA의 모든 사업이 CP 체계를 중심으로 발굴되게 됨에 따라, CP 체계 하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분야의 경우 무엇보다 협력대상국의 정치적 의지가 전제가 되어야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자발적으로 UNCRPD 가입/비준 국가를 중심으로 인천전략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아태지역 국가를 시범으로 우선적으로 하여 사업 발굴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UNCRPD를 기반으로 각 국가 CP 프로그램과 인천전략 목표 및 장애 관련 SDG 세부목표와 매칭되는 사업 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되, 주요목표의 성격에 따라 장애특정적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혹은 장애주류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경우 UNCRPD 비준/가입국이면서 아태지역 국가에 해당한다. 캄보디아 CP 프로그램 가운데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 향상은 인천전략 목표(별첨 3 참조)인 “4. 사회적 보호의 강화”에 해당하여, 세부목표인 “4.A 재활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와 “4.B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수혜 범위를 늘린다.”를 달성하도록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장애특정적 사업을 발굴해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국가별로 인천전략 목표 혹은 장애연관 SDG 세부목표와 매칭될 수 있는 CP 프로그램이 다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와 가장 연관이 높은 프로그램 혹은 현지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적용해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몽골의 경우도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현재 CP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교통안전 개선’은 SDG 세부지표(별첨 4 참조)인 11.2.1과 연계되며, 이는 장애와 연관된 SDG 세부목표에 해당한다. 동 세부목표는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욕구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교통안전

을 개선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합리적 비용에 접근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공'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장애인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주류화 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CP 체계 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발굴 활성화 및 확대 방안〉

구분	〈국가선정〉 UNCRPD 비준 & 아태 지역 국가 우선적 발굴	〈CP와 장애관련 국제 어젠다 간 연계성 고려〉 해당 국 CP와 인천전략 목표 혹은 SDG 세부주제와 어떻게 매칭되는지 조사		〈접근방식〉
〈예시1〉	캄보디아	CP	〈장애이슈 관련 목표〉	소외계층(장애인) 을 타겟으로 한 사업으로 장애특 정적 사업으로 진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 한 농촌개발	〈인천전략 목표〉 4. 사회적 보호의 강화” 4.(4.A) 재활을 포함한 모든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모든 장애인 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4.(4.B)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수혜 범위를 늘린다	
〈예시2〉	몽골	미래 인재 육성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한 ICT 과학기술 교육		교통안전 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사 업혜택에서 제외 되지 않도록 장애 주류적 사업으로 진행
		물류 인프라 · 교통안전 개선	〈SDG 세부목표〉 (11.2) 2030년까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욕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을 확대 하는 방법을 통해 교통안전을 개선 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합리적 비 용에 접근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대 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공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복원력 강화		
		튼튼한 시스템, 튼튼한 정부		
		미래를 꿈꾸는 세대		



장애특정적 혹은 장애연관도가 높은 사업의 발굴 활성화 및 확대

*(장애마커 기준 마커 1 및 2¹¹⁾ 대상사업 발굴 확대)

출처: 저자 작성

11) 장애마커 2사업 : 장애가 해당 사업수행의 주요 목적인 사업

장애마커 1사업 : 장애가 사업 내용과 관련 있고 비교적 중요하나 사업을 수행하게 된 주요동기는 아닌 경우

2. (사업관리) 장애사업 관리를 위한 마커 활용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장애사업을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하여 장애특정적 사업 혹은 장애주류화 사업의 발굴현황이나 전체 협력단 사업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는 등 이행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하지 않아,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부 장애특정적 사업을 제외하고는 장애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예를 들어 장애마커 1에 해당하는 사업들)에서의 장애주류화 현황은 더욱 알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현재 OECD DAC 통계마커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환경, 여성, 인권, 굿거버넌스 마커 외에 DAC에서는 2018년 6월 신규로 자발적인 장애마커를 도입하였다. 이에 동 마커를 활용하여 장애사업을 관리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애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마커 활용과 내평 지표간의 연계를 통해 단계적 확대 방안도 추진해 볼 수 있다.

3. (제도 및 조직정비) 규정 제정 및 인력 확대

제도 및 조직정비 차원에서는 장애포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 및 내부규정 제정을 통해 장애포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장애포괄적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장애 전담 인력 배치, 단내 인지제고 및 체크리스트 활용 안내 교육 확대, 담당관 제도 운영 등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4. (사업관리) 사업단에서 활용 가능한 툴(tool) 개발

사업단에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KOICA 사업 주기에 따라 장애포괄성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툴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략수립, 사업발굴, 사업제안, 예비조사, 집행계획수립, 사업자선정 및 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어떤 사항을 점검하고 고려해야하는지를 안내하고 제시하는 실질적인 체크리스트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기 발간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장애스크리닝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으나, 단계별로 좀 더 세분화된 툴을 제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서원선 · 박미량 · 이진이. 2016.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 확대 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2016. 장애분야 국제지원사업 중장기 계획 개발. 서울: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2017a.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추진방안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017b.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017c.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017d. 프로젝트 사업의 취약계층 포괄적 접근 현황평가 및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018b. 성평등 제고 및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를 위한 KOICA 중기 이행계획(2019-2021).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018c. KOICA 평화기반 사업추진 기본계획(2019-2021).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019a. SDG16이행을 위한 중기이행계획(2019-2021).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019b. KOICA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CP) 수립 보고 내부문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019c. SDG16이행을 위한 중기이행계획(2019-2021).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DFAT. 2015a. Development for all 2015-2020: Strategy for strengthening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in Australia's aid program.

_____. 2015b.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guidance note/ Disability-Inclusion in the DFAT Aid Program.

DFID. 2014. Disability Framework-Leaving No One Behind.

_____. 2015. DFID Disability Framework—One Year On Leaving No One Behind.

_____. 2018a. DFID's Strategy for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_____. 2018b. DFID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Strategy Plan.

JICA. 2009. JICA Thematic Guidelines On Disability.

_____. 2015. Tokyo Recommendation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isability 2015 and Beyond in the ASEAN Region.

_____. 2017. JICA's activities on Disability and Develop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5. Cabinet Decision o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SIDA. 2009. Huma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ida's Plan for Work.

_____. 2013. Huma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 evaluation of the work plan.

_____. 2015. Human Rights Based Approach at Sida: Compilation of Briefs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U.S.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1997. USAID Disability Policy Paper.

USAID. 2016. Disability Program Briefer.

_____. 2016.b Non discrimination Policy.

_____. 2018. How-To-Note Disability Inclusive Education.

WHP 홈페이지: <https://www.who.int/en/news-room/fact-sheets/detail/disability-and-health>(접속일: 2019.11.29.)

(별첨 1)

Priority Area	Questions to Consider
Children and youth, particularly the most marginalized and vulnerable, have increased access to quality education that is safe, relevant, and promotes social well-being ²²	Are young girls and boys with disabilities attending school? If not, why not? Are education venues and related facilities restored/built according to the accessibility standards outlined in USAID's Disability Policy Directive AAPD-0507? How does disability and gender further exacerbate access to educa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individuals from certain religious, ethnic and geographic groups? Do school curriculums promote acceptanc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children with disabilities acces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relief programs, including education programs and materials? Can students with disabilities safely commute between their homes and school? Or are dormitory provisions available? How are girls with disabilities protected from the increased risks they face, such as sexual violence, rape, forced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s psychosocial support available to people with a broad range of disabilities? Does the government have policies in place to address disability inclusive education as regards education in crisis and conflict zones? Ar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in place to measure a) whether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have full access to education in crisis and conflict zones and b) how they are performing with the education they are receiving in these zones?
Children and youth gain literacy, numeracy, and social-emotional skills that are foundational to future learning and success	Are children with disabilities identified early and supported with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 Do schools provide free and appropriate accommodations, including modified length of time for taking tests? Are children receiving instruction in the most appropriate languages and modes/means of communication for the individual to maximize his/her academic potential? Is disability inclusive education training available to prepare teachers for an inclusive classroom?

	How does the community view disability? What kind of education do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ceive? What barriers prevent them from receiving quality education? Do media campaigns highlight the academic abilit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or use positive imag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ir messaging? Does the government have policies in place to address disability inclusive education in primary schools? Ar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in place to measure a) whether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full access to primary schools and b) how they are performing in schools?
Youth gain the skills they need to lead productive lives, gain employment, and positively contribute to society	Do mainstream vocational/technical and tertiary education training programs recruit young women and men with disabilities? If not, why not? Are training facilities physically accessible and do they provide accommodations as necessary to support individual needs? Are scholarships partners and other financial support available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attend such programs? Is support equally available to both men and women? Do vocational/technical training programs maximize the potential of learners to integrate into the paid workforce? Are transitional services available to help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internships partners/exchange programs and entering the paid workforce? Does the government have policies in place to address workforce development for youth with disabilities? Ar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in place to measure a) whether youth with disabilities have full access to workforce training and b) how they are performing in such train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ve the capacity to be central actors in development by conducting and applying research, delivering quality education, and engaging with communities	Do higher education systems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such as accessible buildings, sign language interpreters and Braille, that allows for equitable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o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disability resource centers and services? What relevant specialized degrees for teachers, such as special education and deaf education, are available to sustainably provide equitable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of learners with disabilities? Are students with disabilities permitted to pursue degrees in all areas of study? Does the government have policies in place to address disability inclusive education as regards higher education? Ar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in place to measure a) whether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full access to higher education and b) how they are performing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programs?

출처: USAID How-To Note Disability Inclusive Education(2018)

(별첨 2)

Quick check list for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within the aid programming cycle

Policy and Direction Setting	✓ Does the AIP identify disability-inclusion – integrated within other priorities or as a stand-alone objective? ✓ Does the performance benchmark on reducing poverty consider disability-inclusion? ✓ Does the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use disability-disaggregated data? ✓ Are the multilaterals you are working with implementing and reporting on disability inclusion, both in their core funding and specific activities?
Concept and Design	✓ Has expertise in disability-inclusion been sought to inform the investment concept and design (this can be accessed by contacting the Disability Section or through logging a request on www.DID4All.com.au) ✓ Has disability-inclusion been factored into the investment concept and/or design from the outset, particularly for investments in sectors identified as key opportunities in <i>Development for All 2015–2020</i> (as illustrated in the diagram above)? (It is cheaper to incorporate disability-inclusion at the outset rather than retrospectively once an aid investmen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 Has an analysis been undertaken to inform the investment concept and/or design, which identifies (a) relevant existing issu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 potential barri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ccessing and benefitting from the planned aid investment and (c) solutions to the identified issues? (Please see <i>Barri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i> above) ✓ Have the particular needs and interests of the following been factored-in to the investment design (recognising the following groups face particular barriers and marginalisation, as well as different needs): -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 children and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 people with a range of disabilities, such as psychosoci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 Hav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including national or peak disabled people's organisations, and local community groups) been consulted and involved in the design of the investment, in line with the guiding principle of 'nothing about us without us' (as seen in <i>Development for All 2015–2020</i> and outlined in the diagram above)? ✓ Has the design considered the impact (intended and unintended) that it could have o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ncluded strategies for avoiding or minimising negative impacts on people with disabilities? ✓ Has approximately 3 to 5 per cent of the budget for desig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been set aside to cover potential costs associated with ensu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can (a) participate in accessible consultations regarding desig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and (b) benefit from the aid investment, for example through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 such as sign language interpreters and accessible transport.

	✓ Do the ToRs require implementing partners to be disability inclusive and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 Does the investment design ensure any construction is accessible in line with the Accessibility Design Guide?
Risk management and Procurement	✓ Is disability-inclusion addressed in the risk matrix? ✓ Have issues been identified in relation to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safeguards assessment – particularly for children and those at risk of resettlement? ✓ Are there disability-inclusion deliverables clearly outlined in the scope of services, or agreement, and financed (recommended at 3-5 per cent of the budget)? Do they include plans on: (a) how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be included in the development of the investment concept and/or investment design (b) what measures will be taken to ensure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and benefit from the given aid investment (c) what specific targets will be used to monitor progress towards disability-inclusion and how will data be disaggregated by disability status (d)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s implementers, evaluators and researchers (where possible)?
Monitoring and Evaluation	✓ Is disability disaggregated data being collected and analysed using the Washington Group short set of questions? Is this data also disaggregated by sex to assess the impacts on women, men, boys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there indicators for disability-inclusion in place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with sufficient resources allocated, such as around 3-5 per cent of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budget)? ✓ Has baseline data been established from the outset to measure progress on disability-inclusion? (Nonetheless, a lack of data should not prevent action on disability-inclusion, noting that approximately 15 per cent of a given population has a disability, and this is often higher in developing or conflict-affected countries). ✓ Have systems been established (from the outset) to capture disability information for Aid Quality Checks on investments (as required for those over \$3 million), particularly on the extent to which: (a) <i>The investment actively involves disabled people's organisations in planning,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i> (b) <i>The investment identifies and addresses barriers to inclusion and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y?</i> ✓ Is the implementing partner's performance on addressing disability-inclusion being monitored as part of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 Does the evaluation assess how well the investment performed on promoting disability-inclusion and detail lessons learned?

출처: DFAT Disability-Inclusion in the DFAT Aid Program 2015

(별첨 3) 인천전략 목표에 따른 지표

목 표	지 표
1. 빈곤 감소 및 고용전망의 증진 (세부목표) 1.A. 장애인의 극심한 빈곤을 해소한다. 1.B.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 연령의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고용을 늘린다. 1.C.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직업훈련과 기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한다.	(핵심지표) 1.1 세계은행에 의해 갱신되는 일일 1.25달러(구매력평가) 국 제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 1.2 전체 고용 인구 대비 고용된 장애인의 비율 1.3 훈련받는 모든 인구 대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직업 훈련 및 기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 (보충지표) 1.4 국내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비율
2. 정치 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증진 (세부목표) 2.A.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장애인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2.B. 정치 과정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핵심지표) 2.1 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인의 의 석 비율 2.2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에서 다양한 장애인 집단을 대표 하는 구성원의 비율 2.3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구에 서 장애 여성의 비율 2.4 장애인 투표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이들의 비밀투표를 보 장하는 국가 수도 내 투표소의 비율 (보충지표) 2.5 중앙정부 각료 중 장애인의 비율 2.6 대법원 판사 중 장애인의 비율 2.7 국가 선거관리당국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접근 가능 한 방식으로 선거 과정을 관리할 것을 규정하는 입법의 유무
3.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 (세부목표) 3.A. 국가 수도에서 공공에 개방된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3.B.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성을 향상시킨다. 3.C. 정보 및 의사소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향상시킨다. 3.D. 적합한 보조기구나 생산품이 필요하나 이를 갖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핵심지표) 3.1 국가 수도에서 접근 가능한 정부 청사의 비율 3.2 접근 가능한 국제공항의 비율 3.3 공영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매일 제공되는 자 막 및 수화통역의 비율 3.4 접근 및 이용 가능한 공공 문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접근성 표준을 충족시키는 웹사이트의 비율 3.5 보조기구나 생산품을 필요로 하고 이를 보유한 장애인의 비율

	(보충지표) 3.6 장애를 가진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접근성 검사 프로그램의 유무 3.7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고려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의 모든 설계의 승인을 규제하는 의무적인 BF(barrier-free) 접근 기술 표준의 유무 3.8 수화통역사의 수 3.9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고려한, 공공을 위한 웹사이트 등 모든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의 승인을 규제하는 의무적인 BF(barrier-free) 접근 기술 표준의 유무
4. 사회적 보호의 강화 (세부목표) 4.A. 재활을 포함한 모든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해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4.B.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수혜 범위를 늘린다. 4.C.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하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 광범위 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동료상담 등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핵심지표) 4.1 정부지원의 보건 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 4.2 사회보험 및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보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수혜 범위 4.3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보조, 동료상담 등 정부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유무 (보충지표) 4.4 휴식지원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 4.5 국가의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의 유무 4.6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의 유무 4.7 장애인 보조·지원 서비스에 대한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감소
5.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 (세부목표) 5.A.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조치를 향상시킨다. 5.B. 초·중등 교육 취학률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격차를 반으로 줄인다.	(핵심지표) 5.1 유아기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의 수 5.2 장애아동의 초등교육 취학률 5.3 장애아동의 중등교육 취학률 (보충지표) 5.4 장애의 조기발견과 장애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전·산후 보호시설의 비율 5.5 수화로 교육을 받는 청각장애아동의 비율 5.6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시각장애학생의 비율 5.7 보조기구, 적절하게 변경된 교과과정, 적절한 학습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시청각장애, 자폐 성장에 및 기타 유형의 장애학생 비율

6.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세부목표) 6.A. 장애 소녀 및 여성이 포괄적 개발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6.B.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6.C. 모든 장애 소녀 및 여성이 비장애 소녀 및 여성과 동등하게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D. 장애 소녀 및 여성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늘린다.	(핵심지표) 6.1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에 장애 여성 및 소녀의 참여를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국가의 수 6.2 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의석비율 6.3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 및 생식 관련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장애 소녀 및 여성 대비 장애 소녀 및 여성의 비율 6.4 장애 소녀 및 여성에게 자행되는 성적 학대 및 착취 등의 폭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정부 및 유관 기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의 수 6.5 여하한 폭력 및 학대의 희생자가 된 장애 소녀 및 여성을 위해 재활 등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주도의 프로그램 수
7.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 (세부목표) 7.A.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계획을 강화한다. 7.B. 재난에 대응할 때 장애인에게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의 이행을 강화한다.	(핵심지표) 7.1 장애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계획의 유무 7.2 모든 관련 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포괄적인 훈련의 유무 7.3 접근 가능한 긴급 피난처 및 재난대피소의 비율 (보충지표) 7.4 재난으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장애인의 수 7.5 재난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유무 7.6 재난 대비 및 대응 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 및 기술의 유무
8.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개선 (세부목표) 8.A.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신뢰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장애통계를 생산하여 배포한다. 8.B.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의 이행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태장애인10년의 중간 시점인 2017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애통계를 구축 한다.	(핵심지표) 8.1 '기능 · 장애 · 건강에 대한 국제 분류(ICF)'에 따라 산출한 연령 · 성별 · 인종 · 사회경제적 지위별 장애 출현율 8.2 인천전략의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기본 데이터를 구축한 아태지역 정부의 수 8.3 주류 개발프로그램과 건강 · 성 · 생식 보건 프로그램 등의 정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데이터와 분류된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데이터의 유무

9.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과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촉진 (세부목표) 9.A.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의 중간 시점(2017년)까지 10개의 아태지역 정부가 추가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고, 종료시점(2022년) 까지 또 다른 10개의 정부가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다. 9.B.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조항, 기술적 표준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고,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해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의 국내법을 개정 또는 폐지한다.	(핵심지표) 9.1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정부의 수 9.2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유무 (보충지표) 9.3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아태지역 국가의 수 9.4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여 개정 또는 폐지된 법의 수
10. 하위지역·지역·지역 간 협력의 강화 (세부목표) 10.A.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에스캅 다자간기금 또는 기타 계획 및 프로그램에 기여한다. 10.B. 아태지역의 개발협력기구는 그 정책과 프로그램에 장애 포괄성을 강화 한다. 10.C. 유엔지역위원회는 장애이슈 및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역 간의 경험과 모범사례 공유를 강화한다.	(핵심지표) 10.1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아태지역 다자간 기금에 대한 정부·기타 공여자의 자발적인 연간 기부액 10.2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아태지역 다자간 기금에 기여하는 연간 공여자 수 10.3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기타 공여자의 자발적인 연간 기부액 10.4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남협력 등 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엔 기구의 수 10.5 남남협력 등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위지역 정부간 기구의 수 10.6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의 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참여 하에 수행하는, 남남협력 등의 지역 또는 하위지역 사업의 수 10.7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및 이행과 후속조치 검토를 지원하며, 장애포괄개발과 관련하여 임무 및 정책, 행동계획, 숙련된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활동하는 개발협력 기구의 수 10.8 유엔의 5개 지역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수 10.9 에스캅 및 기타 관련 기관에게 ICF 접근법 등 장애통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태지역 통계전문가의 수 10.10 국가차원에서 유엔 프로그램에 장애인의 권리를 포함시키기 위한 유엔개발그룹(UNDG) 지침에 따라, 장애포괄개발을 표방하는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유엔 개발원조 계획(framework)의 수

(별첨 4) 장애 관련 SDGs 세부목표 및 해당 지표

세부목표	지표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 성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토착민, 취약한 상황의 아동을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취약계층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5.1 세분화 가능한 이 목록의 모든 지표를 대상으로 한 형평성 지수(여성/남성, 농촌/도시, 소득 상위/하위 5분위수, 데이터가 가능해질 시 장애 상태, 토착민, 분쟁 영향 여부 등)
4.a 아동인지적, 장애인지적 및 성인지적 교육시설을 설립하고 상태를 개선하며, 또 모두에게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통합적이고도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4.a.1 (a) 전기 (b) 교육 목적의 인터넷 접근 (c) 교육 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와 자료 (e) 기초 식수 (f) 성별 기초 위생 시설 (g) 기초 손 씻기 시설(WASH기준 부합)에 접근 가능한 학교 비율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해, 완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과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창출 및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달성한다.	8.5.1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 수당 (직업별, 연령별 및 장애인별) 8.5.2 실업률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
10.2 연령, 성,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적 또는 경제적 신분, 그 밖의 다른 지위 등과 상관없이, 2030년까지 모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통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10.2.1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인별)
11.2 2030년까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욕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교통안전을 개선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합리적 비용에 접근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연령별, 성별 및 장애인별)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통합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녹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보장한다.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시가화 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 (연령, 성 및 장애인별)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상태별, 발생 장소별)
17.18 2020년까지 양질의, 시기적절한, 믿을 만한,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신분, 장애, 지리적 위치 및 국가상황과 관련된 속성 등에 의해) 세분화된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최빈국과 군소도 서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린다.	17.18.1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완전 세분화된 국가적 수준에서 작성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비율 17.18.2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7.18.3 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이행 중에 있는 국가 통계 계획을 가진 국가의 수 (재정지원 출처별)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하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ODA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